

제291회 강서구의의회 임시회
행정·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

서울특별시 강서구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
검 토 보 고 서



2022. 10. 21.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의회 행정·재무위원회

서울특별시 강서구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

2022년 10월 21일
전문위원 장 석 현

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: 2022 - 85
- 나. 제 출 자: 강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: 2022년 10월 5일
- 라. 회부일자: 2022년 10월 11일

2. 제안이유

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 제10조에 따라 2022년도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【 공유재산 취득 1건 】

- 취득사유: 화곡중앙시장 고객주차장 건립
 - 위 치: 강서구 가로공원로80길 55(화곡동 366-59)
 - 사업규모: (매입) 토지 1필지 233.1㎡, 건물 1동 242.31㎡
 - 소요예산: 2,300백만원

※ 구의회 의결을 받은 후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의 위치가 변경되어 변경계획 수립

4. 관계법령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
-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 제10조

5. 검토의견

- 「화곡중앙시장 고객주차장 건립」의 건은
 - 고객 주차시설이 없는 화곡중앙시장에 주민 편의를 위하여 고객 주차장을 건립(자주식 9면)하는 건으로
 - 당초 2022년 3월 제285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중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을 받았으나, 부지매입 협의가 결렬되어 부지의 위치가 변경¹⁾됨에 따라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함
 - 위치는 가로공원로80길 55(화곡동 366-59번지)이며
 -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임
 - 사업규모는 토지 1필지 233.1㎡와 건물 1동 242.31㎡이며
 - 소요예산은 총 23억원으로 국비 13억 8,000만원, 시비 5억 5,200만원, 구비 3억 6,800만원임

1)

구분	당초 (2022년도)	변경 (2022년도 수시분)
위치	강서구 가로공원로78가길 5 (화곡동 362-116)	강서구 가로공원로80길 55 (화곡동 366-59)
사업내용	(매입) 토지 189.3㎡, 건물 86.95㎡ (신축) 189.3㎡(지상1층, 9면)	(매입) 토지 233.1㎡, 건물 242.31㎡ (신축) 233.1㎡(지상1층, 9면)
사업예산 (재원)	2,300백만원 (국비 1,380, 시비 552, 구비 368)	2,300백만원 (국비 1,380, 시비 552, 구비 368)
심사결과	제285회 임시회 원안가결	-

6. 종합의견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정 금액 이상의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고,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이 절차에 따라야 함
- 화곡중앙시장 고객주차장 건립 사업은 ‘2020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’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당초 2022년 3월 구 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을 얻었으나, 소유자의 매매 동의 철회로 2022년 8월 신규부지를 확보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변경되어 상정된 안건으로
- 화곡중앙시장은 주택가 밀집지역으로 개별 주차장 확보가 어렵고, 인근 화곡7-1 공영주차장에서는 정기관 주차만 허용하는 실정으로 화곡중앙시장 고객주차장 건립 건은 고객용 주차장이 없어 이용에 불편을 겪는 화곡중앙시장 이용 고객들을 위하여 주차장을 건립하는 사업임
- 고객주차장 건립으로 자주식 주차장이 확보되면 시장 방문고객 증가와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

참고1

관련자료

□ 위치도 및 부지 전경

위치도



현장사진



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
제10조의2(공유재산관리계획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“공유재산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,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를 말한다)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·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출 절차는 「지방자치법」 제55조에 따른다.

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

제7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2. 취득·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

□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

제10조(공유재산 관리계획)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구청장은 구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때도 또한 같다.